

강의평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교수법 및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강의 평가에 대한 기준 및 방법, 점수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강의평가는 당해 정규 학기에 개설된 전체 교과목을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수강인원이 5인 미만인 강좌(전공실기 교과목 포함)
2. 현장실습 및 사회봉사활동 교과
3.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교과목
4. 교과담당교수가 직접 강의하지 않는 교과목

제3조(평가항목) 평가항목은 강의준비성, 충실성, 효율성, 평가의 공정성, 강의만족도 등을 반영한다.

제4조(평가기준) 강의평가 점수는 영역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강의준비 및 진행, 강의내용, 강의 방법, 과제물, 강의만족에 대한 결과를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평가주기) 평가주기는 매 학기 단위로 한다.

제6조(평가방법 및 결과 통보) ① 강의평가는 5단계 척도 평가로 실시한다.

- ② 강의평가는 수강학생이 지정된 기간 내에 본교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강 교과목에 대하여 평가한다.
- ③ 강좌별 강의평가는 문항별로 모두 응답하여야 한다. 단, 강의평가 소견은 제외한다.
- ④ 각 교과목 수강학생은 학기 종료 후 성적 열람 시 평가할 수 있다.
- ⑤ 강의평가 결과 통보는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가 본교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7조(평가점수 산정) ① 강의평가 점수는 문항 응답지 전체의 산술평균으로 5.00 만점으로 한다.

- ② 2인 이상의 교원이 강의하는(팀티칭) 강좌는 대표 교원을 지정하여 통합 평가하고, 해당 강좌의 참여 교원에게 동일 점수를 부여한다.
- ③ 수강인원 51명이상 강좌는 0.1점을 추가로 강의평가 점수에 부여한다.

제8조(평가결과활용) ① 교원의 강의평가결과는 교수업적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② 강의평가 우수교원(강사포함)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 ③ 강의평가 결과 평균점수가 연속 2회 이상 3.5미만인 비전임교원 및 강사는 재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7.22.>
- ④ 강의평가 결과가 3.5미만인 교원(강사포함)에게는 교학지원처장이 강의개선계획서 제출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 ⑤ 교원의 강의평가 결과가 3.5미만이며,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수법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개정 2021.7.22.>

제9조(비밀유지) 강의평가에 참여한 학생들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 칙(2021. 4. 1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7. 2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